

「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6월 27일

나. 발 의 자: 김민성·강승수·김근한·김낙관·김영길·김영태·김원섭·김재우·
김정도·김춘남·박교상·박세채·신용하·양진오·이명희·이상호·
이정희·장미경·장세구·정지원·추은희 의원(21명)

다. 회부일자: 2023년 6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7월 6일

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민 성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, 용어의 정의, 시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지역상생구역의 기준, 자율상권조합 설립 구비서류(안 제4조~제5조)
- 상권 전문관리자 업무범위, 조합 사업 지원, 지원 절차(안 제6조~제8조)

- 조합 사업결과 보고, 자율상권구역 재산 관리(안 제9조~제10조)
-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(안 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
- 부서검토 : 일자리경제과 의견제출(붙임)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조례 제정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써,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켜 지역 경제 활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